

2026년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지원사업 모집공고

수출농산물의 수확 후 저장·운송 등 수출물류에서 CA기술 등 저온유통 환경구축으로 신선도 향상을 통한 농산물 폐기물량 감축 및 품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「2026년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지원사업」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02월 06일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

사업개요

- 지원규모 : 3개 업체 내외
- 사업기간 : 약정일로부터 당해연도 12.31까지
- 지원대상 :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(단체)
 -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 운영사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
 - * (지원제외) '24~'25년도 동 사업 포기 업체(약정 이후), 수입산물 업체 및 공장기법 제31조에 따른 대기업
- 지원자격 : '25년 수출실적이 있으며, 부지를 확보한 업체

※ **부지확보 세부요건** : 대상 부지(구축 예정지) 사업신청자 소유(예정)하고 있거나 임대(예정)받은 토지
 * 사업 최종 선정 이후,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
 * 임대차 계약 시 계약종료일자가 2036.12.31. 이후 (10년이상)로 계약되어야 함

※ **수출실적** : 무역통계진흥원(TRASS) 선적일 기준(통합실적), 수출물량 공동출하의 경우, 별도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* 국산 농축산물, 가공(주원료 50% 국산) 에 한함

- 지원내용 : CA저장고(신규시설 개보수), CA질소발생기, 저온저장고(신규시설) 구축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지원한도 (면적)	기준단가	총사업비	지원액		
				국비지원(70%)	자부담(30%)	
저장고	저온저장고(신규시설)	330m ²	130만원/m ²	429	300.3	128.7
	CA저장고(신규시설)	132m ²	300만원/m ²	396	277.2	118.8
	CA저장고(개보수)	132m ²	300만원/m ²	396	277.2	118.8
질소 발생기	CA질소발생기 (고정식, 이동식)	1식	110백만원/1식	110	77	33

※ **준수사항** : 표준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추진

- 계약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이용하여 공고·입찰·계약 체결
-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·용역 구매계약, 시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·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·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
-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사전검토 및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 확인 후 계약 체결

□ **지원조건** : 국비 70%(자부담 30%)

□ **문의처** : aT 농식품육성부(061-931-0832)

2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신청기간** : 공고일 ~ '26. 2. 27(금), 18시까지

□ **신청방법 및 제출서류**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

<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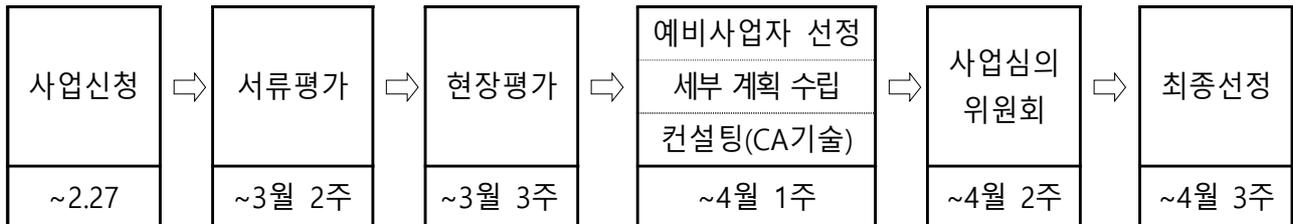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신청서(서식1) 및 사업계획서(서식2) - 사업자등록증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3) -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최근 2개년) - 설계도면(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) -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(서식4) - 시공업체 견적서 1부(비교견적 포함)
해당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 - 구축 예정부지의 대장(토지 및 건축물) - 구축 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(토지 및 건물) - 구축 예정부지의 건축물 현황도 - 기타 부지확보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부지사용 승낙서 등) - 안전시설 관련 인증 사본, 전담인력 자격증 사본 -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* CA저장고 및 저온저장고 신규시설 시 건축물대장(현황도) 및 등기부등본은 제외

3

선정방법

- 선정방법 :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,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및 업체별 사업예산 배정 확정

< 사업자 선정 절차(안) >



* 평가결과 동점 발생 시 현장평가 고득점 →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서류·현장 평가 각 단계별 60% 득점업체 대상 예비사업자 선정

구분	평가내용	배점	통과요건
서류평가	수출실적, 운영자금, 인증·전담인력 보유	40	60%(24점) 이상 득점
현장평가	구축 적합성·활용가능성, 추진 여건, 계획 적정성	60	60%(36점) 이상 득점

< 사업자 선정절차별 추가제출 서류(안) >

구분	제출서류
예비사업자 선정 시 추가 제출서류	-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 - 설비 구축 계획서
사업자 선정 완료 시 추가 제출서류	- 설계도서(건축, 전기, 토목, 냉방 등) - 공인 원가 검증기관 검토보고서 - 인허가 관련 서류 - 시공업체 계약서, 착수계 등 - 감리원 선임계(인력 투입 계획) - 토지 등기부등본(발급일자 : 사업 최종 선정 이후)

* 추후 변동 가능하며, 재안내 예정

4

정산방법 및 제출서류

- 정산방법 : 기한 내 지원항목 구축증빙 및 수출이행 증빙 제출 후 검토결과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 지원

* 원본대조필 날인 후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상 기한 내 업로드

- (사업의무) 지원시설·설비 구축 완료 및 수출 이행(CA컨테이너 2대이상)

* 저온저장고 구축 지원 시에도 CA컨테이너 활용 수출이행 필요, CA컨테이너 규격 품목물량 등 별도 기준 없음

** CA저장고는 구축 완료 후 농촌진흥청의 CA저장고 기밀시험 방법에 따라 압력시험 시 적합해야 함

- (정산요건) 지원시설·설비 구축 완료 시 정산인정금액의 70%까지 정산 가능하며, 수출이행 완료 시 잔여 30% 정산 가능

< 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70% 정산 신청 시 :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(보험기간 : 정산신청일 ~ 사업기간 종료일)
- 수출이행 증빙 : 수출신고필증 또는 BL상 CA컨테이너로 수출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구 삽입 필수(예시 : CA CONTAINER FLUSHING BY △△ 등)이며, 수출일정은 별도 진행 가능
- 수출이행 정산인정 기준 : 선적서류(BL)상 선적일자 또는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 상 수리일자 기준(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), 상업송장(I/V), B/L, P/L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요)

*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국고보조금 정산 불가

□ 정산기준 및 제출서류 : 공통 및 세부정산기준 참고

5

정산보고 및 중요재산 등록

- 정산보고 : 사업비를 1억원 이상 수령하는 업체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(서식) 및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검증 확인을 받은 검증보고서를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aT 본사로 보고
- 사후관리 : 지원시설·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(이동식 질소발생기, 5년) 사후관리 필요, aT관할 지역본부에서 반기별 1회(연 2회) 사후관리 실시
 - (중요재산 정보 표기) 사업비를 최종 교부받은 지원업체는 동판, 아크릴 등 떨어지지 않는 형태 중요재산 안내 표지판 제작·부착 필요
 - (부기등기) CA저장고(신규시설·개보수) 및 저온저장고(신규시설) 지원받은 경우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
 - * 부기등기 이행을 위해 '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' 발급 요청 가능
 - (보증보험 가입) 부기등기가 불가한 시설 및 설비 구축의 경우, '정부보조금 지급 보증보험'에 가입 필요(사후관리 종료일까지, 자부담)
 - (재산 처분의 제한)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 불가함

* 건물 및 부속설비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, 기계·장비 : 구입일로부터 5년간